

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

의안 번호	25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6. .

제출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19회계연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,921,182천원으로서, 이중 5건에 658,414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

<u>계(5건)</u>	<u>658,414천원</u>
○ 평창군 폐기물처리장 주민지원기금 분배 주민투표 실시	62,004천원
○ 제13호 태풍 '링링' 피해복구비	4,212천원
○ 제17호 태풍 '타파' 및 제18호 태풍 '미탁' 피해복구	556,298천원
○ 방림-횡성 농어촌버스 노선폐지에 따른 대체버스 운영	20,000천원
○ 농어촌민박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일제점검	15,900천원 임.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(예비비 사용의 제한)

-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.